

2019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여성가족부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타킷나이

Contents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

0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09

신고의무제도 Q&A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1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참고 1] 성범죄 발생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시설

22

[참고 2] 취업제한 대상기관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참고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서식)

26





기관 등이 해당하는 기관·시설이
단체인 장애인 2명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란?

- 19세 미만의 자,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2019년 기준 : 2001. 1. 1. 이후 출생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추행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 공연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등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내 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 범죄유형별 분포

(단위: 명(%))

죄명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음란물 제작 등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아동 복지법 위반	계
가해자 기준	659(20.6)	90(2.8)	1,674(52.4)	76(2.4)	344(10.8)	83(2.6)	172(5.4)	97(3.0)	3,195(100.0)
피해자기준	700(16.7)	100(2.4)	2,260(53.8)	118(2.8)	430(10.2)	126(3.0)	298(7.1)	169(4.0)	4,201(100.0)

출처: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7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2018)

○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가해자는 3,195명이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4,201명으로 집계됨. 피해자수가 가해자수보다 많은 것은 한명의 가해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행했다고 볼 수 있음(여성가족부, 2018)

●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구분

(단위 : 명(%))

피해자 연령	범죄유형								계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음란물 제작 등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아동 복지법	
6세 이하	1 (0.1)	3 (3.0)	58 (2.6)	0 (0.0)	0 (0.0)	0 (0.0)	0 (0.0)	5 (3.0)	67 (1.6)
7~12세	120 (17.1)	25 (25.0)	526 (23.3)	19 (16.1)	9 (2.1)	2 (1.6)	4 (1.3)	63 (37.3)	768 (18.3)
13~15세	253 (36.1)	24 (24.0)	590 (26.1)	20 (16.9)	192 (44.7)	71 (56.3)	146 (49.0)	62 (36.7)	1,358 (32.3)
16세 이상	325 (46.4)	48 (48.0)	1,070 (47.3)	30 (25.4)	194 (45.1)	53 (42.1)	136 (45.6)	36 (21.3)	1,892 (45.0)
미상	1 (0.1)	0 (0.0)	16 (0.7)	49 (41.5)	35 (8.1)	0 (0.0)	12(4.0)	3(1.8)	116(2.8)
계	700 (100.0)	100 (100.0)	2,260(100.0)	118 (100.0)	430 (100.0)	126 (100.0)	298 (100.0)	169(100.0)	4,201 (100.0)

출처: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7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2018)

- 아동·청소년 피해자 연령별 범죄유형 분포를 보면, 전체의 45.0%가 16세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3~15세 32.3%, 7~12세 18.3%의 순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18).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57세로 2017년 14.56세와 비슷한 수준
-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음란물 제작(미상 제외 시) 등의 경우 16세 이상의 집단에서,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은 13세~15세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은 7~12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음란물 제작 등의 경우는 16세 이상(미상제외)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고, 6세 이하를 제외하고 비교적 전 연령층에 고루 분포하였으며, 특히, 전체 피해자 중 7~12세가 16.1%로 나타나 아동들이 음란물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줌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 범죄유형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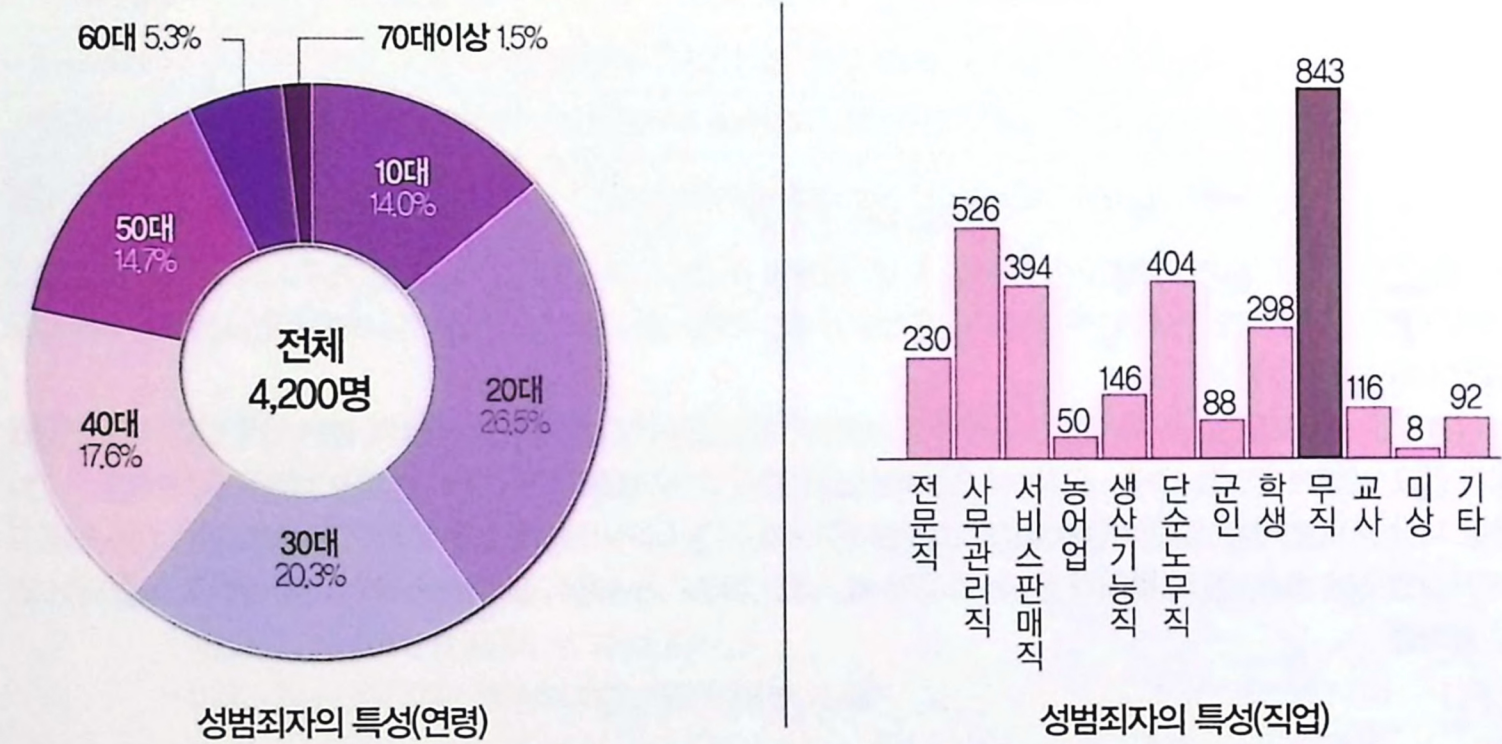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범죄유형								계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기타 (음란물 제작 등)	아동 복지법	
전혀 모르는 사람	106 (15.1)	14 (14.0)	1,157 (51.2)	91 (21.2)	6 (4.8)	41 (13.8)	2 (1.7)	100 (59.2)	1,517 (36.1)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	406 (58.0)	67 (67.0)	854 (37.8)	311 (72.3)	69(54.8)	157 (52.7)	63 (53.4)	43 (25.4)	1,970 (46.9)
가족 및 친척	136 (19.4)	16 (16.0)	182 (8.1)	0 (0.0)	0 (0.0)	1 (0.3)	1 (0.8)	15 (8.9)	351 (8.4)

출처: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7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2018)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 아동·청소년과 범죄자와의 관계 조사결과,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이 46.9%, 전혀 모르는 사람이 36.1%, 가족 및 친척이 8.4%의 순으로 나타남.

- 강간범죄의 경우 아는 사람 58.0%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15.1%, 가족 및 친척 19.4%의 순임
- 유사강간의 경우 아는 사람 67.0%, 가족 및 친척 16.0%, 전혀 모르는 사람 14.0%의 순임.
- 강제추행의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51.2%, 아는 사람 37.8%(선생님 15.4%, 이웃·잘 알고 지내는 사람 2.3%, 직장상사·고용주 3.5%,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 3.1% 등), 가족 및 친척 8.1%의 순임

●성범죄자의 특성



출처: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 2017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2018)

- 성범죄자의 특성(연령)은 20대(26.5%)가 가장 높았으며, 30대(20.3%), 40대(17.6%), 50대(14.7%), 10대(14%)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성범죄자의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이 고루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성범죄자의 특성(직업)은 무직(843명/26.4%)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무 관리직 526명(16.5%), 단순노무직 404명(12.6%), 서비스판매직이 394명(12.3%) 순으로 나타남

●범행발생장소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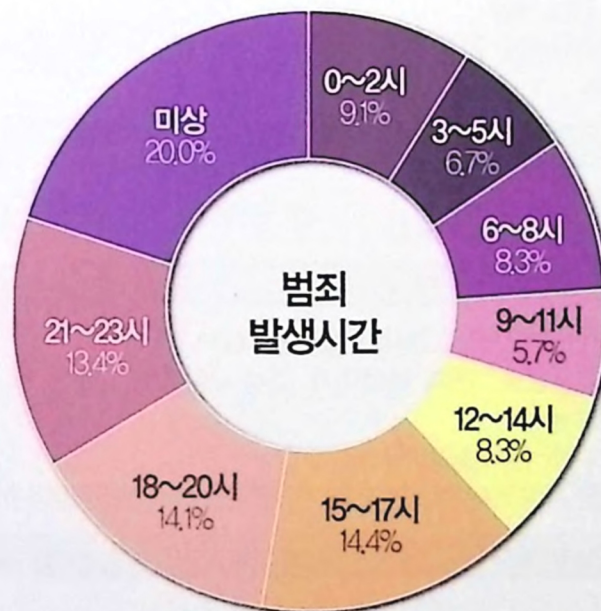
범행발생장소	범죄유형			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집	314(44.9)	45(45.0)	436(19.3)	795(26.0)
주택가 및 이면도로	20(2.9)	1(1.0)	104(4.6)	125(4.1)
학교	10(1.4)	2(2.0)	290(12.8)	302(10.0)

주차장	9(1.3)	2(2.0)	18(0.8)	29(0.9)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	216(30.9)	31(31.0)	445(19.7)	692(22.6)
야외, 거리, 산야, 대중교통시설 등	50(7.1)	4(4.0)	636(28.1)	690(22.5)
(공중)화장실	11(1.6)	3(3.0)	38(1.7)	52(1.7)
자동차 안	41(5.9)	3(3.0)	85(3.8)	129(4.2)
학원 및 보육시설	5(0.7)	2(2.0)	76(3.7)	83(2.7)
기타	24(3.4)	7(7.0)	132(5.8)	163(5.3)
계	700(100.0)	100(100.0)	2,260(100.0)	3,060(100.0)

출처: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7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2018)

○범행발생장소는 집(795명/26%)이 가장 높게 응답됨. 이어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692명/22.6%),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690명/22.5%), 학교(302명/10%) 순으로 나타남

● 범행발생시간



출처: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7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2018)

● 유인방법

○성폭력범죄 유형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은 친분(10.4%)으로 가장 높음. 전년도에도 친분이 18.0% 가장 높았음(여성가족부, 2018).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후 성적인 범죄행위를 하는 그루밍(Grooming) 성범죄의 형태로 많이 나타남



*그루밍(Grooming)이란?

그루밍이란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성착취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을 갖는다. 또한 신뢰를 쌓거나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McAlinden, 2012).

그루밍의 과정 및 단계(6단계)

1단계	피해자 고르기	• 욕구파악: 취미, 관심사, 진로, 종교, 성적호기심 등 • 취약점 파악: 외로움, 가출, 빈곤, 지적 장애, 폭력, 방임, 저연령 등
↓		
2단계	피해자의 신뢰 얻기	• 관심 나누기 • 친분 만들기
↓		
3단계	욕구 충족 시켜주기	• 칭찬하기, 선물주기, 놀이공원에 데려가기 • 취미공유: 게임레벨 상승, 아이템 거래 • 성에 대한 정보 제공 • 진로상담, 기회제공, 일자리 제공 • 경제적 지원
↓		
4단계	고립시키기	• 비밀 만들기 • 가해자에 대한 의존성 키우기
↓		
5단계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 함정 만들기: 신체사진 주고받기, 성적인 대화 나누기 • 학습시키기: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 원래 연인 간에 이런 행동은 당연한 거야 등 • 훈련시키기: 성적인 행동에 익숙하게 함 • 속이기: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안마하는 거야, 병원 놀이 하는 거야 등
↓		
6단계	통제 유지하기	• 비밀유지 • 조종하기: 거부하지 못하게 하기 • 체념시키기: 이야기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네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등 • 협박하기: 둘 사이에 있던 일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겠다. • 의존성 강화

출처: 탁틴내일 역(2019).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위험한 손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신고의무제도 개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신고의무 대상시설 및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 대상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학교(초중등학교), 대학('18.7.17. 신규추가)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 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보호·재활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학원 및 교습소		

○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운영자, 종사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신고절차 및 방법

○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상담 또는 지문이 필요한 경우는 (사)탁틴내일, 전국 소재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

※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1단계: 사건 발생	- 수사기관 신고 (112) * 신고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소, 117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또는 1366 (여성긴급전화)을 통해 상담 가능 -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지원요청 * 가명조사: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음 * 이사비 지원: 보복 당할 우려가 인정되면 소요된 비용 지원 * 비상호출기 지원: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지원하여 위급 시 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경호 업체가 출동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됨
2단계: 지원	- 성폭력상담소: 상담지원, 법정 및 수사기관 동행,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 여성가족부: 의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 무료법률구조 사업 (무료 변호인 연계,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률지원 등) - 보호시설: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내 보호 및 숙식 제공(일정기간), 상담 및 치료, 직업훈련비 지원 - 국선변호사: 수사 및 형사재판과정 지원
3단계: 사후 지원	-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 집단상담, 미술치료, 사이코드라마 등 심리치유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가능

●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신고의무제도 Q&A

- Q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시설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추행사건 등이 일어나서 시설장에게 보고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시설의 장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시설장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종사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종사자 및 보고를 받은 시설장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Q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신고 절차와 방법이 궁금해요? (9p 신고절차 및 방법 참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17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1366 (여성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의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Q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시설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추행사건 등이 일어났는데 해바라기센터/성폭력상담소/SPO(학교전담경찰관) 등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신고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나요?

신고는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실관계 등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기록이 남는데 신고의무자는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 후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의 성범죄 사건으로 유무죄 확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Q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강하게 거부할 때(예: 부모님께 알리면 죽어버릴 것이다 등)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의무자라면 업무상 성폭력을 인지했을 때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가 의심될 때에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경우, 비밀이 보장된다고 믿고 상담을 한 내담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고가 되었을 때 배신감을 느끼고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경찰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였다가, 추후에 가해자를 벌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시 신고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을 하며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Q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우리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이라 신고하기가 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살과 15살인데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호 중인 아이들이라 난처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신고의무에 따라 사건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5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13세 가해자는 형사미성년자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

Q 신고의무자로서 성폭력 피해가 의심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은 아직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상담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피해가 의심이 되지만 선뜻 신고하거나 아이에게 먼저 말을 걸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SPO(학교전담경찰관) 혹은 117(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에 인지한 상황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을 기록해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아이의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 후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Q 교사/지도자로서 신고 이후 어떻게 피해자를 지원해야 하나요? (10p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참고)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의료/심리/법률 지원 등을 파악한 후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도움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아동청소년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취업제한제도 개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 취업제한 대상 및 제한 기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자로서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최대 10년) ('18.7.17.부터 시행)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20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대상 성범죄 : 20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취업제한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종전('18.7.17. 이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1년

구분	종전 형 확정된 자 (부칙 제4조)		개정법 시행 이후 형 확정된 자 (본문 제56조)
	'06.6.30.~'09.12.31.	'10.1.1~'18.7.16	'18.7.17 이후
3년 초과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5년	형의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5년	법원이 형 선고 시 취업제한 명령 선고 (최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3년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	
벌금형	형 확정된 날부터 1년	형 확정된 날부터 1년	

● 취업제한 대상기관 (법 제56조제1항)

유치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등
학교(초중등학교, 위탁교육기관)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지만 해당)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PC방),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의 사업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문화보급 전수시설,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등)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직접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만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쉼터	대학('18.7.17 신규추가)
어린이집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18.7.17 신규추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취약계층아동대상 통합서비스 수행기관('18.7.17 신규추가)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장애인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제공 기관·단체 ('18.7.17 신규추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지만 해당)	「지방자치법」제 144조 공공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지정 아동청소년이용시설 ('18.9.14 신규추가)
체육시설	「지방교육자치법」제 32조 교육 기관 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18.9.14 신규추가)
의료기관(의료법 제 2조의 의료인만 해당)	

* 참고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참조

>>성범죄경력조회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경력조회 의무자	조회대상자	비고
지자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본인 동의서 불필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 예정자	조회대상자 동의서 필요

※ 운영하려는 자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장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한 것으로 봄(법 제56조제4항)
-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한 것으로 봄(법 제56조제5항)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조회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시스템(복지부 보육정보시스템, 교육부 NES) 사용
- (첨부서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경찰서 요청 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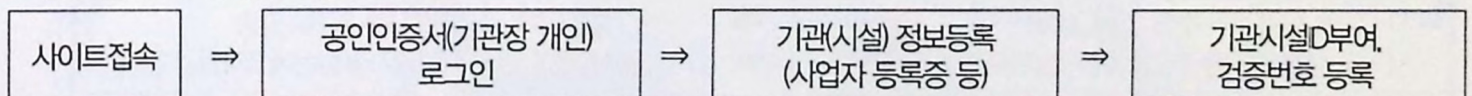
- (조회대상)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 (조회방법)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또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으로 조회 신청
- (첨부서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신고증 등)

취업 예정자	취업(예정)자로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를 받아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작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취업(예정)자로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작성 인·허가증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경찰서(민원실 또는 형사(수사)과)에 제출
해당경찰서 담당자	관할 경찰서에서는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에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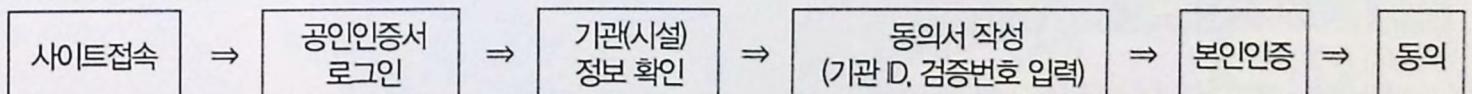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조회(온라인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 출력 가능
- 취업(예정)자의 동의(취업예정자가 직접 공인인증처리를 얻어 시설(기관)장이 신청서 작성 및 회신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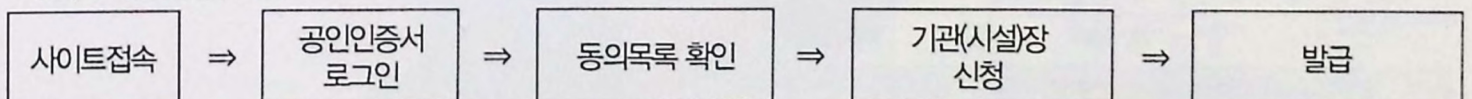
기관(시설)장의 시설정보 사전등록



취업(예정)자 동의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



※ 성범죄경력 신청·회보의 오·남용 방지 및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실시(24시간 신청 가능)

※ 회신서는 시스템의 문제가 없거나, 경찰서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발급/열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제공합니다.”

개인범죄경력 확인
 공적후보자
 국제결혼
 농업협동조합법
 외국 입국/체류

발급동의
 취업동의 등도 지정된 시설(기관)의 장에게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시설(기관)장 시설(기관) 정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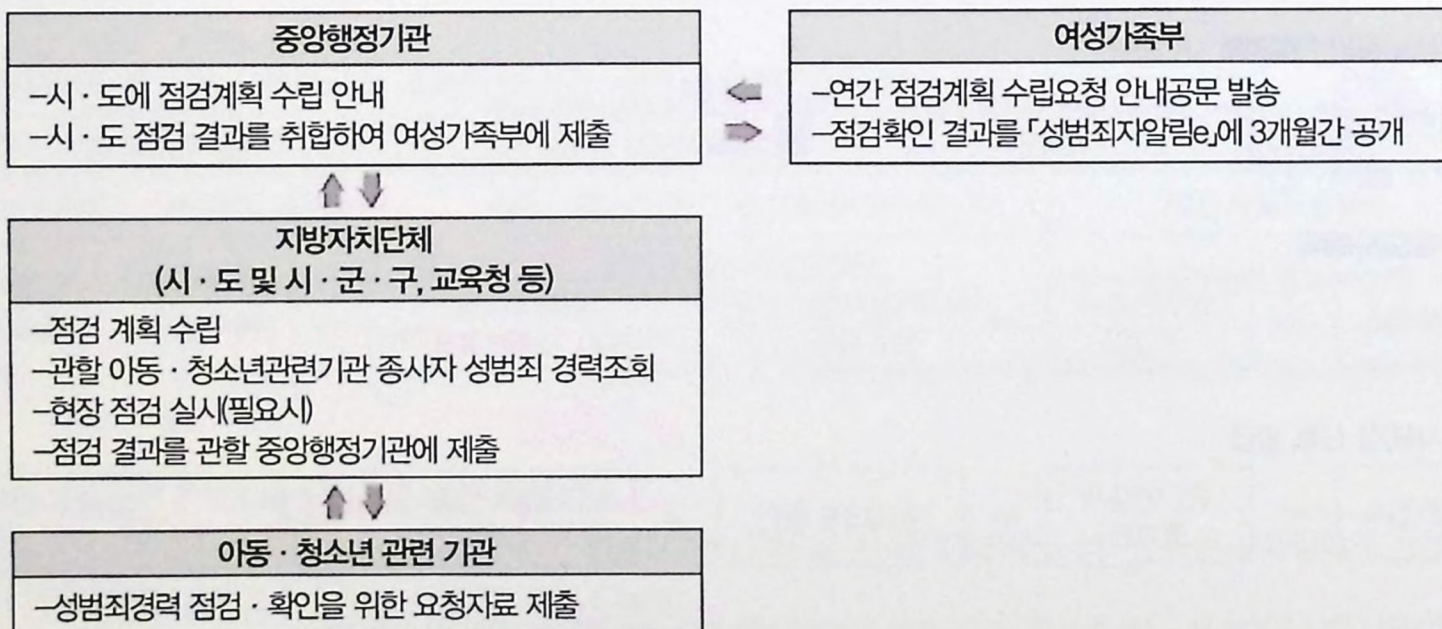
인터넷 발급문서
진 위 확 인
 신청서식 안내
관련 법령
 알아보기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간편예뉴얼 보기
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FAQ 자주묻는질문
 + 더보기
 Internet Explorer 작동이 중지되었을때!!
 발급동의 한 회보서가 기관(시설)에서 보이지 않아 인쇄할 수 없을때!!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하나의 회보서로 출력 하려면?
 동의할 회보서 유형이 없거나, 진행이 되지 않을때!!

공지사항
 MORE
 • 범죄경력회보서 시스템 설치마뉴얼 2017-09-01
 • 시설정보 변경시 재검증 공지 안내 2017-05-15

● 취업(운영)중인 성범죄자 점검

-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 여부 확인·점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 점검 의무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 점검 체계



●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 취업예정자(사실상 노무 제공 예정자 포함)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
 - ※ 위반회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해임 요구 등
 - ※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기관 폐쇄 요구
 - ※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미이행 시 관계 행정기관장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Q 성범죄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고용형태는 해당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일일강사 포함) 등이 모두 해당되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교생실습자, 사회복지무원 등도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경비업 법인은 경비업무 종사자만,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은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취업이 제한됨

Q 취업제한제도는 2006.6.30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의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범한 자가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2006년 6월 30일 이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2006년 6월 30일 이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또는 운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성범죄경력 조회를 경찰서에 요청하더라도 2006년 6월 30일 이전의 성범죄는 '성범죄 경력 없음'으로 회신되므로 취업제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경력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서 취업 중인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발견 즉시 해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

당초 채용(운영 승인)을 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결과 성범죄 경력이 없음으로 확인되었으나 취업한 이후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해임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영자가 성범죄로 인해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Q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은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에 따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청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채용중인 종사자의 성범죄경력 조회 주기는 얼마의 주기로 해야 하는지와 점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및 운영여부를 점검·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 Q 취업하고자 하는 자(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여부를 확인 후 취업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 후에 확인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취업예정자의 경우는 취업 근무일 이전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을 확인 한 후 근무를 하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사실상 노무제공자'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 성범죄 취업제한 기관의 교육실습생, 사회복지요원, 자원봉사자 등도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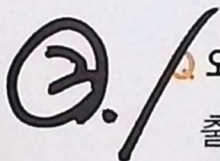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통비 등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 없어 경력조회 대상이 됩니다. 교육실습생, 사회복지요원도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학점, 군복무 등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대가가 인정되며, 사실상 노무제공자란 기관에서 해야 할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를 예로 들면 교육실습생 역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회복지요원도 장애학생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관리하는 등 학교에서 본래 수행해야 할 업무를 하고 있기에 사실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합니다.

- Q 공공기관인 의료기관에서 공무원 임용 시와 같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범죄경력 조회를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나요?

공무원 임용 시에 하는 신원조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내역에 대해서만 회보되며 적용 기간이 다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 경력의 내용이 제외될 수 있어, 성범죄경력 조회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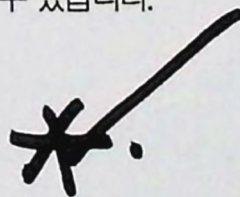
- Q 201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포함되었는데 의료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의료인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이에 해당되며,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사무직 직원 등은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과 무관하게 내국인과 같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단지, 외국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만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Q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되니까?

'1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누가 하나요?

과태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이 부과·징수합니다.

Q 학교/수련관 등에서 성인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외부강사를 초청할 때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나요?

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는 것은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회성 강좌나 성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강좌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노무자에 해당되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 1~2시간 진행하는 특강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위해 이메일이나 팩스로 범죄경력동의서를 받아도 되나요? 혹은 강사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제출해도 되나요?

동의서는 자필 서명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강사 본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그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혹은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나,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개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Q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비전임 교원,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87.17부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은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학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비전임 교원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 학교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학교매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나요?

학교시설의 일부를 학교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학교매점을 운영하는 자는 용역업체 직원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기에 학교 운영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 대학에 임시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등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인가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Q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 회의 등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나요?

기관에 감사의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실비보상 또는 사례비 차원의 비용을 지급할 뿐 통상적인 취업 및 노무 등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Q 근로장학생의 경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근로장학금을 받는 것인데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근로장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과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실상 노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Q 대학 외부에서 현장학습, 강의, 워크숍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나요?

대학 업무의 일환으로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현장학습,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일 강사, 버스 운전기사 등 사실상 노무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 국립대학의 경우 인·허가증이 없는 경우 성범죄경력조회를 어떻게 하나요?

국립대학은 인허가 기관이 아닌 법령에 설치근거를 둔 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증빙서류로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기관증빙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 등은 반드시 인허가증으로 증빙 필요)

Q 방송대학의 성범죄 경력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방송대학은 학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이나, 학생의 출입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어 성범죄경력조회 범위를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방송대학의 시설 안에서 촬영" = "일반대학의 강의실에서 학생 대면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출연을 위하여 직접 대학 내 촬영 시설에 오는 시간 강사 및 촬영 스텝, 성우, 기타 종사자 등의 경우 모두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이 됩니다.

Q 대학('18.7.17. 이후 신규기관) 내에 있는 부속시설인 병원, 유치원의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병원, 유치원은 기존의 법으로 이미 적용받고 있었으므로 각각의 기관의 장이 신청기관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합니다. (2006년 이후 범죄발생 성범죄자 적용)

[참고 1] 성범죄 발생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시설

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상담(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및 캠페인과 연구 활동 등	02-3141-6191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전국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의 접수 및 이에 대한 상담, 피해자에 대한 임시 보호 또는 의료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및 수사 재판 등 동행	02-330-5801~2
헬프콜 청소년 상담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에 이르기까지 1388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교우관계, 학업성적, 진로 등 고민이 있을 때, 가정·학교 폭력, 성폭 력·성매매 피해 등을 당했을 때, 가출해서 갈 곳이 없을 때, 청소년 자 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을 때, 청소년 구조 등 기타 도움이 필요할 때 등 365일 24시간 상담 제공	국번 없이 1388 일반전화: 1388 (또는 110)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또는 110) 문자상담#1388
학교폭력 신고번호 117	-전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 상담, 유관기관 연계업무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화·문자 상담	국번 없이 117 / 문자신고: #0117 인터넷(홈페이지): 안전 Dream(또는 검색 어 117)으로 신고 인터넷상담 가능
수사기관(경찰서)		국번 없이 112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1차적 긴급지원센터로서 365 일 24시간 운영하며 상담 및 피난처를 제공하고 전문 상담소,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여성을 지원	국번 없이 1366 또는 1366을 통하여 각 지역별 센터 안내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형: 위기상담 및 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모든 연령, 모든 성별) 위기 상담, 수사, 법률 의료지원 제공(365일 24시간) -아동·청소년형: 지속상담 및 치료 - 성폭력피해자와 가족(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모든 연령·성별의 지적장애인) 지속상담, 법률, 의료, 심리치료 제공(월~금, 09시~18시) -통합형: 위기지원 및 지속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와 가족(모든 연령, 모든 성별) 위기상담, 지속상담, 수사, 법률, 의료, 심리 치료 제공	02-735-7507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며 학대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치 료 및 서비스 제공,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보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 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 을 수행	02-558-139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국번 없이 132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 및 직접적인 지원활동(의료지원, 법적지 원 등) 및 장애여성 인권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활동 등	02-3013-1367
청소년성문화센터	-시청각적, 참여적 성교육 및 실천지침 성격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왜곡 된 성문화에 대한 재조명 및 대안 마련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적 체험 형태의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과 관련 정보 제공 -성교육 관련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성교육 센터로서 기반 구축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 교육 실시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참조) TEL 02-3144-1223 HOME www.wesay.or.kr



[참고2] 취업제한대상기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대상기관 범위	관련법률	소관부처	참고사항
제1호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교육부, 교육청	
제2호 학교, 위탁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18.7.17.부터 시행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교육부	'18.7.17.부터 시행
제3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3호	"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 어학·통역·번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은 성범죄 조희대상기관 아니며 그 외 평생직업교육학원중에서도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조희대상기관 아님.
제4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여성가족부	
제5호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시설》 • 공연시설: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도서관: 도서관, 작은도서관 • 기타: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원, 국악원, 전수화관, 종합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이용시설
	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미래창조과학부, 지방자치단체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교육부, 교육청	"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14,19조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수목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8호	지자체	"

[참고2] 취업제한대상기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법 제56조제1항)	대상기관 범위	관련법률	소관부처	참고사항
제6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제7호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제10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제8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합서비스수행기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제52조 및 동법 제37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제9호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제10호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주택법」 제2조제3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제11호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제12호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만 해당	「의료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31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제13호 게임(시설)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사업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제14호 경비업 법인	경비업 법인	「경비업법」 제2조제1호	경찰청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제15호 청소년활동 기획 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7호, 제9조의2 참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숙박형,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16호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제26조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제17호 청소년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참고2] 취업제한대상기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법 제56조제1항)	대상기관 범위	관련법률	소관부처	참고사항
제18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8호	여성가족부	가정방문 학습지 업체
제19호장애인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제28조	교육부, 교육청	'18.7.17.부터 시행
제20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지방자치법」 제144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18.9.14.부터 시행
제21호 아동청소년 대상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 회관, 과학교육원 등	「지방교육자치법」 제32조	교육부, 교육청	'18.9.14.부터 시행





[참고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3.2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조회용도	[] 운영하려는 자용	[] 취업(예정)자용 (직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서 1부(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한글·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경찰서장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경찰서장	⇒	통보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조회 용도	[] 운영하려는 자용	[] 취업(예정)자용 (직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한글·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경찰서장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경찰서장	⇒	통보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신청인	성 명	
	기관명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제한 해당여부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해당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V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Memo





대표번호 02-338-7480

홈페이지 <http://www.tacteen.net/>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02-3141-619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8, 6409